

Ⓢ140-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-75[<http://www.kma.org>]/전화(02)6350-****/전송(02)790-8911
보험국장 김기성(6574)/ 보험급여팀장 김선우(6576)/ 대리 고영옥(6573)/ E-mail: kma2010@daum.net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532호

시행일자 2017. 1. 2.

수 신 각 시도지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

참 조

제 목 -정정고시-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
일부개정 고시 안내

1. 관련근거

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- 8089호(2016. 12. 30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- 281(2016. 12. 30)

2. [대한의사협회, 대의협 813-1520호(2016. 12. 30)]로 안내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고시 개정안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71호) 관련입니다.

3.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71호, 2016.12.29.)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한 바,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주요 개정(정정)사항

-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의 '주'항 오류 수정
- 부칙 중 2월 1일 시행항목 추가 등

○ 시행일 : 2017년 1월 1일

붙임: 고시개정문 1부. 끝.

붙임: 고시개정문 각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